



저작물 복제 허용범위 ‘일부분’ 규정, 최소화 바람직”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 복제 시에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부분’의 개념을 도서관 등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0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세미나’에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서 ‘일부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도서관과 이용자들간에 논란과 불편의 소지를 야기할 뿐 아니라, 원활한 복사·전송권 집중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관광부와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후원하고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사)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저작물·일부분·이용에 관한 적정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복제업무규정’ 제7조가 규정한 ‘3분의 1’ 범위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복제에 관한 도서관의 면책 자체를 인정치 않을 만큼 엄격한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영국과 미국조차 ‘일부분’의 범위를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독립된 저작물에 대해 ‘절반 이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게 통설이다. 이 연구원은 그래서 “‘일부분’의 범위에 대해 최소한 ‘절반 이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국내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복제 관련 규정,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이 연구원은 또 환경변화와 저작자 보호의 충실을 기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범위의 수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성능화된 복사기능과 복사기기의 전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지금의 규정”이라는 그는 “1차적으로 저작자 보호를 통해 문화발달을 꾀한다는 제1의적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고려한 집중관리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도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재현 중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특히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서비스와 저작권’이란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 상호 대차에 기존 협약의 일괄 적용이나 종래의 관행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 ILL)는 협정을 맺은 도서관끼리 이용자 요구에 따라 각자 소장한 자료를 빌려주거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홍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서관과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의 이해를 도모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적용의 애매함을 제거하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서관에 안전한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 제공’에 관한 국가적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맡을 역할과 기능을 적시하기도 했다. 도서관이 센터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실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해 저작자 및 출판권자와의 저작물 권리 처리 방안 및 대책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부과와 공정한 분배방식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된 도서관 면책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추세와 조화를 이룰 것을 권했다. 도서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홍보·교육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호대차 원문제공 행위는 중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홍 교수는 “저작권이 있는 학술 저작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도서관의 안전한 상호대차를 위해 이용방법과 조건을 서면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 